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재정립(안 제2조)
-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황(안 제3조)
- 다. 축사의 이전 조치명령 등(안 제4조)
- 라. 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수료(안 제5조,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참고사항

- 예산관련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관련사항 없음
- 기타 협의 승인 내용 : 해당 없음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4.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시설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 연구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및 5마리 이하의 개와 양,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경우
5.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6.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
7.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 된 경우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신고 및 허가 면적의 20%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면적내에서 하는 경우
2. 가축분뇨 발생량은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강화되는 범위에서 축종변경을 하는 경우

제4조(축사의 이전 조치명령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거 수수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자원화·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

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의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처리장 사용료 등)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분기 1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가축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

2.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3.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농가 소재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각 호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수수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및비용부담조례」,

2.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및비용부담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가축사육 제한, 계약대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제3조 관련]

읍·면·동	제 한 구 역	비 고
선 산 읍	- 완전리,동부리:도시계획구역내 전지역 - 노상리:도시계획구역중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이문리:도시계획구역내 성황당(18반) 및 자연녹지를 제외한 전지역 - 교리:10~23반 전지역 - 화조리: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를 제외한 전지역	
고 아 읍	원호리 원호택지지구내 원호 3, 4, 5, 6, 7리 전지역	
송 정 동	전지역	
원 평 1 동	전지역	
원 평 2 동	전지역	
지 산 동	지산 1,2동 앞들을 제외한 전지역 (지산1동 1통4반, 13통6반, 지산2동 앞들, 양호동외의 지역)	
도 량 동	도량 1,2동 전지역	
선주원남동	- 수점동 공원지정지역,봉곡동 토지구획정리지구 - 선주원남동 10~20통 및 22~25통전지역, 21통82번지 일대(덕방이)를 제외한 전지역	
형 곡 1 동	전지역	
형 곡 2 동	전지역	
신 평 1 동	전지역	
신 평 2 동	전지역	
비 산 동	전지역	
공 단 1 동	전지역	
공 단 2 동	전지역	
광 평 동	다송마을(2통)을 제외한 전지역	
상모사곡동	1, 2, 3, 4, 5, 10, 11, 12통 전지역 및 8통(1,3,4,5,6반), 9통(1,2,3,5,6반)전지역	
임 오 동	임은동 전지역, 오태동 7통(1~8반), 8통(1~6반), 9통(1~4반), 10통(1~5반), 11통(1~9반), 12통(1~5반), 13통(1~5반), 14통(1~6반)	
인 동 동	인동동 20,21,22통을 제외한 전지역	
진 미 동	전지역	
양 포 동	9통(솔피), 2단지 전지역, 옥계동토지구획정리지구	

■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2]

가축분뇨 수거 수수료

[제5조 관련]

단 위	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비 고
1ℓ 당	6원	5원	1원	

가축분뇨 반입대장
[제6조 관련]

년 월 일	수집·운반 업체명	반입량(ℓ)	차량번호	결 제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5. "퇴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10. "생산자단체"라 함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소과 실 · 과		환경안전과
입 안 자	담 당 관	문 경 원
	담 당	김 동 진
	담 당 자	송 진 호 (480-5283)